

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7일	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전화번호	
운행형태 및 변경 사유	운행형태(광역형 또는 도시형)				
	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	변경 사유				

「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
귀하

첨부서류	1. 신규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.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. 차고 나. 정류소 다. 영업소 라. 휴게실 및 대기실 마. 교육훈련시설 바.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